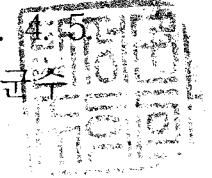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9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4. 5.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노인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 금액을 조례로 명시하지 않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내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내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변경을 건의할 수 있도록 신설(안 제11조 제2항)
- 시설이용료, 강당사용료 삭제[별표 1, 2]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, 제36조 (*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입법예고(2023. 3. 7. ~ 3. 27.) 결과 : 의견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“자는 별표1에 의한 이용료를”을“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를”로 한다.

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“자는 별표2의 사용료를”을“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를”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자체운영규정 등) ① 수탁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용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6조에 따른 복지관 내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그 금액의 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.

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이용료 및 사용료)①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	제6조(이용료 및 사용료)① ----- -----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를 -----.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현행과 같음.
④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. 1.~ 3. (생략)	④ ----- -----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를 ----- ----- -----.
제11조(자체운영규정)수탁기관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.	제 11조(자체운영규정 등)① 수탁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----- -----.
<신설>	② 수탁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용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6조에 따른 복지관 내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그

금액의 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.

[별표 1] 시설이용료(제6조제1항 관련)

<삭제>

시설이용료(제6조제1항 관련)

구 분	운영기준	이용료(원)		비 고
		국민기초 생활수급자	일 반	
식 당	1회	무료	1,300	

[별표 2] 강당사용료(제6조제4항 관련)

강당사용료(제6조제4항 관련)

구 분	기 준	이용료 (원)	비 고
대강당	•주간 1회/2시간 이내 (주간 : 09:00~18:00)	30,000원	•야간 및 토·일요일, 공 휴일은 주간사용료의 20% 가산 •2시간 초과시는 시간당 10,000원 가산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 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0. 24.>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>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제36조(운영위원회)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2. 1. 26.>

1. 시설운영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·평가에 관한 사항
3.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4.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
5.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
6.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<신설 2012. 1. 26.>

1. 시설의 장
2. 시설 거주자 대표

3.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
 4. 시설 종사자의 대표
 5. 해당 시·군·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6.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
 7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8.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<신설 2012. 1. 26.>

1. 시설의 회계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 2.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·사고에 관한 사항
-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
 2012. 1. 26.>